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상당수가 현재는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정비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